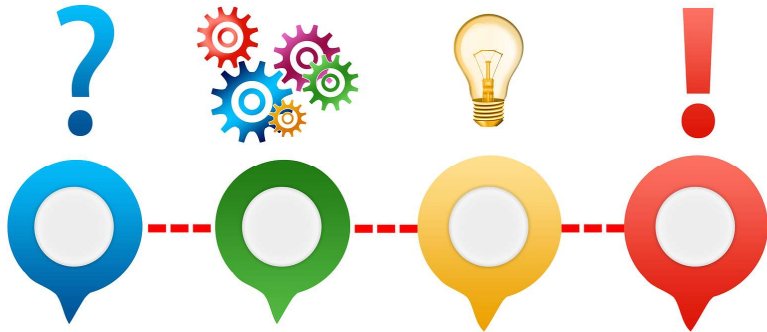


2019년도

인천시

중소기업육성자금

GUIDE BOOK



인천테크노파크
INCHEON TECHNOPARK

☐☐ 목 차 ☐☐

①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개요	1
② 자금신청 및 지원 절차	6
③ 경영안정자금	7
1) 지원대상	7
2) 이자 지원율	8
3) 지원한도 및 내역	10
4) 구비서류	11
5) 기타 업종범위	15
④ 구조고도화자금	16
1) 지원대상	16
2) 지원내용	18
3) 구비서류	20

1)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개요

1) 지원총괄

구분	경영안정자금	구조고도화자금
지원규모	9,000억원	550억원
지원대상	제조업 및 관련 서비스업, 지식기반서비스업 등	제조업, 지식산업센터건설사업자 등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 운전자금의 이차차액보전 - 지원율: 기본(0.3~2.0%)+추가(0.2~1.0%) · 기본 : 기업별 대출금리에 따른 차등지원 · 추가 : 우대 및 목적성지원의 추가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 시설자금의 저리용자 - 용자금리 : 2.3 ~ 2.8% (재해기업 지원자금 : 무이자)
지원자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자금 - 목적자금 · 산업확충기업 · 수출기업 · 창조경제혁신기업 · 고성장기업 · 고용창출기업 · 기술·창업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종구조고도화자금 · 기계구입자금, 공장확보자금, 벤처창업자금 - 산업구조고도화자금 · 지식산업센터건설자금, 재해자금
용자한도	3억원 ~ 50억원 이내	업체당 10억원 이내 (단, 지식산업센터건설자금-200억원)
용자기간	1년, 2년, 3년 ※ 단, 수출자금은 6개월, 1년	5년, 8년
신청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자금 : 분기별 접수 - 목적자금 : 상시 접수 	개시일 ~ 소진시
대출은행	기업, 씨티, 신한, 우리, KB국민, KEB하나, NH농협, 수협중앙회, 부산, JB전북, 산업, 광주, 대구, 수출입 은행	

2) 변동사항(2019년)

○ 경영안정자금

구분	변경내용
지원규모 확대	· 2018년 8,500억원 → 2019년 9,000억원 · 일반기업 지원한도 확대 (3억원 → 5억원)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기업혜택 강화	고성장·고용창출기업에 대한 금리혜택 강화 (한국은행 C2자금 연계지원) 등
고용창출기업 지원강화	한도증액, 기준완화, 대상추가 등을 통해 집중지원
수출자금 대상확대	간접수출 기업에 대해서도 자금지원 실시
창조경제혁신기업 기준강화	우대지원에 걸맞은 성과창출을 위한 지원대상 세분화, 창업사실 추가증빙 등 기준 및 요건 강화
재해기업을 위한 경영안정자금 신설	기존 기금용자를 통한 지원은 유지하고, 추가로 경영안정자금에서도 재해자금 지원
장애인기업 우대지원을 상향	기존 +0.6% → +0.7%
우대지원 적용대상 확대	시 선정 품질우수제품에 대해서도 우대지원, 우수기업 재선정 기업 지원
용자기간 선택폭 확대	보증서 담보대출 등으로 수요가 많은 용자기간(1년) 추가

○ 구조고도화자금

구분	변경내용
지원규모 확대	2018년 500억원 → 2019년 550억원
재해자금 지원기준 완화	제조업의 부대시설에 대해서도 재해자금을 지원, 서류간소화 등 피해기업 복구지원 강화



자금상담 260-0623/0622/0621, 시스템관련 070-8787-8286-7

3) 지원한도 및 내역

○ 경영안정자금 (기업 온전자금의 이자차액보전 : 0.3% ~ 3.0%)

- 지원규모 : 9,000억원

구분	지원규모	지원대상	업체당 지원한도	지원내역	대출기간	
일반지원	3,000억원	일반기업	5억원	이자보전 (기본지원)	1,2,3년 ¹⁾	
		FTA 인증 수출기업, FTA 활용 성공사례 수상기업, 8대 전략산업, 소상공인 경영대상 수상기업, 가족친화기업, 품질우수제품 선정기업	5억원	이자보전 (기본+우대지원율 0.5%)		
		유망중소기업, 아름다운공장 선정기업, 중소기업인대상 수상기업(18년 이전 수상자)	10억원	이자보전 (기본+우대지원율 0.5%)		
		비전기업	20억원	이자보전 (기본+우대지원율 0.5%)		
		중견성장사다리기업, 중소기업인 대상수상기업(18년 수상자부터 적용)	30억원			
		여성기업	5억원			
		장애인기업	5억원			
		(사)함께하는인천사람들	2천만원	이자보전 (기본+우대지원율 0.5%)		4년 ²⁾
		산업확충 기업	400억원	우리시 전입기업		30억원
강화산업단지 입주기업	5억원					
서운산업단지 입주기업	15억원					
산단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	5억원					
재해기업	10억원					
목적성 지원	수출기업	최근 1년 이내 수출실적 또는 수출계약 실적이 있는 기업	20억원	이자보전 (기본+추가지원율 0.2%) * 은행 금리우대 별도	6개월 ,1년 ³⁾	
						창조경제 혁신기업
	고성장 기업 I	2,500억원	3개년도 매출액 평균 증가율 20% 이상 기업	20억원	이자보전 (기본+추가지원율 0.5%)	1,2,3년 ¹⁾
			매출액 100억원(또는 최근월 종업원수 100명) 이상이며, 3개년 매출액 평균 증가율 15% 이상 기업	20억원	이자보전 (기본+추가지원율 0.3%)	
	고용창출 기업 I	1,900억원	3개년도 종업원수 평균 증가율 15% 이상 기업	20-50억원	이자보전 (기본+추가지원율 1.0%)	
	고용창출 기업 II		매출액 100억원(또는 최근월 종업원수 100명) 이상이며, 3개년 종업원수 평균 증가율 15% 이상 기업	20-50억원	이자보전 (기본+추가지원율 0.5%)	
	고용창출 기업 III		시 또는 정부 선정 일자리창출우수기업	20-50억원	이자보전 (기본+추가지원율 0.5%)	
	고용창출 기업 IV		신청일기준 직전 1년간 고용증가 10명 이상	20-50억원	이자보전 (기본+추가지원율 0.5%)	
	기술창업 기업	200억원	기술력과 사업성이 우수한 기업으로 보증기관을 통해 보증을 지원받는 기업	5억원	보증료 지원 (시 1.0% 이내, 보증기관 0.2% 우대)	3년 ⁴⁾

※ 지원결정 업체에 대하여 신용보증기금의 매출채권보험 가입시 보험료 10% 할인우대 지원

- 1, 2, 3년 : 1년 만기 일시상환, 2년 만기 일시상환, 6개월 거치 5회 균등분할상환
- 4년 : 1년 거치 36개월 균등분할상환, 48개월 균등분할상환
- 6개월, 1년 : 6개월 만기 일시상환, 1년 만기 일시상환
- 3년 : 3년 만기 일시상환

※ 이자 지원율

항목	이자보전금 지원 내용			
	- 기업 대출금리별 기본 지원율(차등지원)			
기본지원율	지원 업체 융자금리	이자지원율	지원 업체 융자금리	이자지원율
	1.01% ~ 1.50%	0.3%	5.01% ~ 5.25%	1.2%
	1.51% ~ 2.00%	0.4%	5.26% ~ 5.50%	1.3%
	2.01% ~ 2.50%	0.5%	5.51% ~ 5.75%	1.4%
	2.51% ~ 3.00%	0.6%	5.76% ~ 6.00%	1.5%
	3.01% ~ 3.50%	0.7%	6.01% ~ 6.25%	1.6%
	3.51% ~ 4.00%	0.8%	6.26% ~ 6.50%	1.7%
	4.01% ~ 4.33%	0.9%	6.51% ~ 6.75%	1.8%
	4.34% ~ 4.66%	1.0%	6.76% ~ 7.00%	1.9%
	4.67% ~ 5.00%	1.1%	7.01% ~	2.0%
* 대출금리는 변동 및 고정으로 기업체가 자율적으로 선택하며 금리는 은행 여신 규정에 따라 은행과 기업 간에 자율적으로 결정				
추가지원율	- 우대 및 목적성지원의 추가지원율 · 일반지원 우대기업 추가지원율 : 0.5% ~ 0.6% · 목적성지원 추가지원율 : 0.2% ~ 1.0%			
최종지원율	- 기본지원율과 우대(추가)지원율을 합산하여 최종지원율 산정 기본지원율 + 우대(추가)지원율 = 최종지원율			

○ 구조고도화자금 (기업 시설자금의 저리용자 : 0% ~ 2.8%)

- 지원규모 : 550억원

구분	지원사업	업체당 융자한도	융자기간	대출금리	
일중 구조 고도화 (320억원)	구조 고도화 자금 (기계구입)	자동화	10억원	8년(3년거치 5년 분기별 분할상환)	2.8% (변동)
		연계운전자금 (최대2억원)		3년(1년거치 2년 분기별 분할상환)	
		소기업육성	4억원	8년(3년거치 5년 분기별 분할상환)	
		연계운전자금 (최대1억원)		3년(1년거치 2년 분기별 분할상환)	
	기업 시설자금 (사업확보)	공장확보 (구조고도화산단 환경개선사업)	10억원	8년(3년거치 5년 분기별 분할상환)	
		기업부설연구소설치	10억원	8년(3년거치 5년 분기별 분할상환)	
		국가산단 주차장설치	5억원	8년(3년거치 5년 분기별 분할상환)	
		벤처창업자금	7억원	8년(3년거치 5년 분기별 분할상환)	
	운전자금 (최대3억원)	5년(2년거치 3년 분기별 분할상환)		2.3% (고정)	
	산업 구조 고도화 (230억원)	산업 기반 조성	지식산업센터건설 (200억원)	200억원	
재해기업 (30억원)			2억원	5년(2년거치 3년 분기별 분할상환)	0% (고정)

※ 지원결정 업체에 대하여 신용보증기금의 매출채권보험 가입시 보험료 10% 할인우대

※ 기업혜택 강화를 위한 「매출채권보험」 지원안내

1. 지원내용 : 매출채권보험 **보험료 10%할인**
(인천시와 신용보증기금이 2019년부터 협력지원)
2. 지원대상 : 2019년도 경영안정자금 및 구조고도화자금 지원결정 업체
3. 매출채권보험 : 중소기업이 외상대금을 회수하지 못할 때 미수금을 대신 지급하여줌으로써 중소기업의 연쇄도산을 방지함

매출채권보험은 중소기업이 거래처에 외상판매하고, 외상대금을 회수하지 못할 때 발생하는 손실금을 **준정부기관인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장해드리는 **공적보험제도**입니다.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1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위탁을 받아 지원하고 있습니다.

4. 보험금 지급사유 : 폐업, 부도, 기업회생, 결제지연(약속기한*+2개월)
* (약속기한) 월마감 후 익월말 3개월 어음 수금 시 「45일 + 90일」 로 표시

5. 보험상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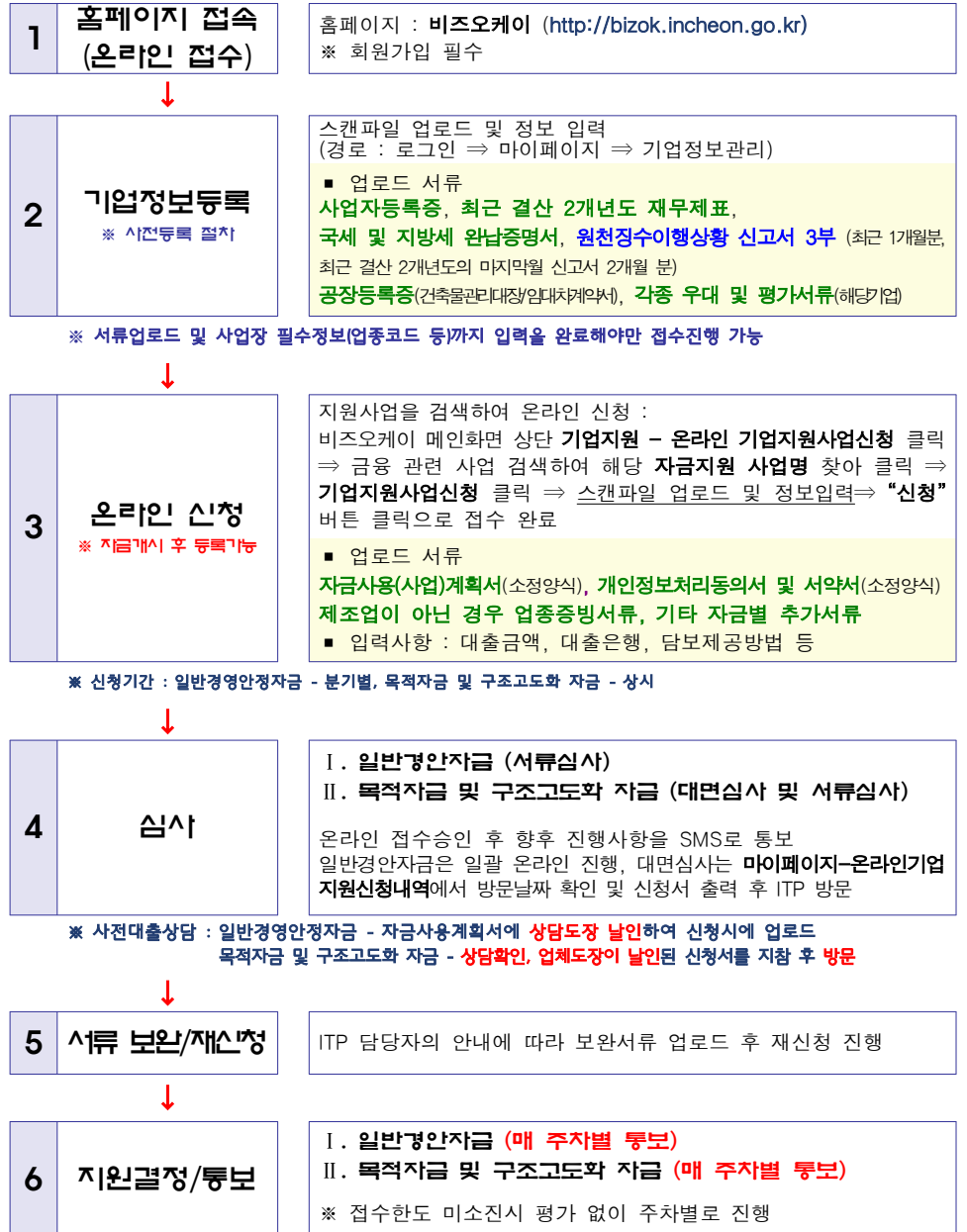
구 분	대상 거래처	등급기준 (18등급)	보장금액
한 사 랑	원하는 거래처 1개씩 골라서 가입	11등급 이상	등급별 차 등
	간편보험 : 최대 50백만원(2억원 한도)	1~7등급, 무등급*	
다 사 랑	표준형	거래비중 2% 이상 거래처 전체 가입	16등급 이상, 무등급*
	선택형	거래비중 2% 이상 + 2% 미만 15개	16등급 이상, 무등급*
	맞춤형	원하는 거래처 5개 이상으로 가입	13등급 이상
	소기업형	거래비중 5%이상(계약자 당기 매출 30억미만)	신용등급 무관

6. 보험료 : 통상 보장금액의 1~2% 수준 (거래처 등급에 따라 차등)

지연납부제도(분납, 카드 등), **적자보**는 **공적보험**(손해율 200%, 상업보험사 50%)

7. 문의처 : **신용보증기금 인천신용보험센터** 032-450-1546

② 자금신청 및 지원 절차



※ 비즈오케이 마이페이지 온라인기업지원신청내역에서 통보서 출력 후 은행 제출 및 절차에 따른 대출 실행

3 경영안정자금

1) 지원대상

구분	내용
기본요건	- 전업률 30% 이상 ※ 전업률 : 재무제표 손익계산서의 “총매출액” 중 “제품매출” 이 차지하는 비율 ※ 접수시 뿐만아니라 지원중 계속적으로 충족되어야 함 - 공장등록증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공장등록증> · 제조시설면적이 500㎡ 이상인 경우 공장등록증 필수 <건축물관리대장> (+임차인일 경우 “임대차계약서” 추가 확인) · 제조시설면적이 500㎡ 미만인 경우 건축물관리대장으로 증빙 가능 ※ 단, 대장에 표기된 용도가 제조용도(제조소/제조장/공장)이어야 함 ※ 일반건축물관리대장 또는 전유부 가능, 표제부 불가(소유주 미표기)
	- 사업자등록증 표기사항만으로는 증빙되지 않으며, 반드시 관련된 등록증 또는 허가증 이 있어야 지원가능 - 지원업종 및 증빙서류는 뒷장의 경영안정자금 [구비서류] 에서 확인
추가요건	- 우대증빙서류 : 우대기업 으로 구분된 인증서 (각 해당기관을 통해 발급, 세부 내용은 뒷장의 경영안정자금 [구비서류] 에서 확인)첨부시 적용 ※ 여성기업, 장애인 기업을 제외한 우대증빙서류는 모두 1회에 한하여 적용가능
	산업확충기업 - 우리지 전입기업 : 이전일로부터 1년 이내 - 신규산단입주기업 : 강화 및 서운산단 입주(입주일로부터 1년 이내) 및 입주예정기업 - 산단 지식산업센터입주기업 : 산단단지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입주일로부터 1년 이내) - 재해기업 : 자연재해 또는 인적재난의 피해를 입은기업(피해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수출기업 - 수출실적 또는 수출계약에 따라 수출자금이 필요한 기업 ※ 수출실적의 1/2이내 또는 수출계약의 90%이내 지원
	창조경제혁신기업 - 창업7년 이내 의 기업으로 창의적 아이디어로 성장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창조경제혁신센터 에서 추천하는 기업 (창조경제혁신기업 지원은 1회에 한함)
	고성장기업 <고성장기업 I> - 3개년도 매출액 평균 증가율 20% 이상인 기업 ※ 매출액 : 최근 결산 3개년도의 손익계산서 매출액 <고성장기업 II> - 최근 결산년도 매출액 100억원 또는 최근월 고용인원 100명 이상 기업으로, 3개년도 매출액 평균 증가율 5% 이상(증빙서류는 고성장기업 I 과 동일)
	고용창출기업 <고용창출기업 I> - 3개년도 종업원수 평균 증가율 15% 이상인 기업 ※ 종업원수 : 최근 3개년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간이세액 인원(마지막월 기준) <고용창출기업 II> - 최근 결산년도 매출액 100억원 또는 최근월 고용인원 100명 이상 기업으로, 3개년도 고용인원 평균 증가율 5% 이상(증빙서류는 고용창출기업 I 과 동일) <고용창출기업 III> - 시 또는 정부 선정 일자리창출우수기업 인증서 구비(유효기간 확인) <고용창출기업 IV> - 신청일 기준 직전 1년간 종업원수 10명 이상 증가한 기업 ※ 종업원수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반기신고업체의 경우 고용보험가입자 명부)
기술창업기업 - 창업기업(7년이내)및 기술기업으로 보증기관(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을 통해 보증지원(신규보증)이 가능한 기업 중 보종료 0.5% 초과기업	

※ 고성장기업 I · II 자금은 3개년도 사업실적 평가(18년 결산기준, 2016.1.2 이후의 창업기업은 해당안됨)
 ※ 고용창출기업 I · II 자금은 종업원 최소인원이 5인 이상이어야 함(2016.1.2 이후의 창업기업은 해당안됨)

※ 지원제외 대상

- 인천시(市) 또는 구(區) 경영안정자금 수혜자로 접수일 현재 상환중인 기업
- ※ 단, 인천시 경영안정자금 지원결정잔액(또는 매출액 대비 지원한도)이 남아있는 업체는 남은 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
- 동일기업 중복지원 제한 (해당연도 중앙부처 및 지자체 동일분야 자금 기 수혜기업)
 ※ 목적자금 및 시 선정 우수기업은 지원 제한기준 적용에서 제외함
- 중앙부처 및 지자체 지원자금이 최근 5년간 100억원 초과하는 경우 지원제한
 ※ 목적자금 및 시 선정 우수기업은 지원 제한기준 적용에서 제외함
- 부동산업, 골프장 및 스키장운영업 등 사치향락 소비나 투기 조장업
- 유가증권 또는 코스닥 시장 상장기업
 ※ 비전,유망,중소기업인대상수상,중견성장사다리,품질우수제품 등 시 우수기업 및 선정지정기업 적용제외
- 휴·폐업 중인 기업, 제조업 전업률 30% 미만인 기업(제조업에 한함)
- 공정위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관계회사로 지정된 중소기업(필요시 중소기업확인서 제출)
- 세금 체납중인 기업
-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2) 이자 지원율

항목	이자보전금 지원 내용				
기본지원율	- 기업 대출금리별 기본 지원율(차등지원)				
		지원 업체 융자금리	이자지원율	지원 업체 융자금리	이자지원율
		1.01% ~ 1.50%	0.3%	5.01% ~ 5.25%	1.2%
		1.51% ~ 2.00%	0.4%	5.26% ~ 5.50%	1.3%
		2.01% ~ 2.50%	0.5%	5.51% ~ 5.75%	1.4%
		2.51% ~ 3.00%	0.6%	5.76% ~ 6.00%	1.5%
		3.01% ~ 3.50%	0.7%	6.01% ~ 6.25%	1.6%
		3.51% ~ 4.00%	0.8%	6.26% ~ 6.50%	1.7%
		4.01% ~ 4.33%	0.9%	6.51% ~ 6.75%	1.8%
		4.34% ~ 4.66%	1.0%	6.76% ~ 7.00%	1.9%
	4.67% ~ 5.00%	1.1%	7.01% ~	2.0%	
※ 대출금리는 변동 및 고정으로 기업체가 자율적으로 선택하며 금리는 은행 여신 규정에 따라 은행과 기업 간에 자율적으로 결정					
우대(추가)지원율	- 우대 및 목적성지원의 추가지원율 · 일반지원 우대기업 추가지원율 : 0.5% ~ 0.7% · 목적성지원 추가지원율 : 0.2% ~ 1.0%				

※ 최종지원율 산정

최종 지원율	- 기본지원율과 우대(추가)지원율을 합산하여 최종지원율 산정 기본지원율 + 우대(추가)지원율 = 합산지원율 - 금리구간에 따른 기본지원율(차등지원율)과 우대 및 추가지원율이 합산됨
--------	--

※ 횡수 및 한도산정 기준

- 총 지원횡수는 제한하지 않으며, 일반기업자금일 경우 접수한도 초과시 심사표를 통해 횡수에 대해 심사함
- 우대기업 적용은 기본적으로 증빙서류 유효기간 이내에 **회차 구분 없이 1회에 한해서 우대**
- 시 우수기업(유망중소기업, 비전기업, 중견성장사다리기업 등)은 5년간 한도내 2회까지 나누어 우대지원 가능(17년 선정분부터)
- 여성기업 및 장애인기업, 함께하는 인천사람들 추천기업은 회차 제한 없이 항시 우대
- 일반자금은 현재 상환중일 경우 현재 기준의 최대한도(5억원) 이내에서 잔여한도 지원
- **재신청 가능시기** : 대출기간 만료 시, 조기 상환시(대출금원계 확인서 제출)
- 지원한도는 총매출액(최근결산 재무제표)의 1/3을 초과할 수 없음

※ 상환방법

- 경영안정자금의 대표적인 용자기간 : 1년, 2년 또는 3년

구분	1년	2년	3년	비고
내용	1년 만기 일시상환	2년 만기 일시상환	6개월 거치 5회 균등분할 상환	※ 연장지원 없음

- 대출상환방법 예시

구분	1년 (만기상환)	2년 (만기상환)	3년 (5회균등분할상환)	6M	1Y	18M	2Y	30M	3Y
상환비율		100% 상환	100% 상환			1/5 상환	1/5 상환	1/5 상환	1/5 상환

- 대출기간 1년 선택 업체 : 만기 시 원금 100% 상환
- 대출기간 2년 선택 업체 : 만기 시 원금 100% 상환
- 대출기간 3년 선택 업체 : 대출 후 1년이 되는 시점부터 1/5씩 6개월 단위로 원금 상환 (총 5회 납입)

※ 단, 수출자금 대출기간 6개월, 1년은 모두 만기일시 상환

※ 단, 기술·창업기업자금 대출기간 3년은 만기일시 상환

※ 단, (사)함께하는인천사람들 추천기업 자금 대출기간 4년은 1년 거치 36개월 균등분할 또는 48개월 균등분할 상환

※ 단, 원금의 (분할)상환 연체에 따른 발생이자(상환일이 비영업일일 경우 상환연장에 따른 휴일분 이자도 포함)는 기업이 부담함

※ 경영안정자금의 정책금리 적용은 정해진 용자기간 상환스케줄과 일치되는 대출에 한하며, 그와 상이한 대출에 대해서는 이차보전 스케줄이 관리될 수 있더라도 지원이 불가함

3) 지원한도 및 내역

① 일반지원

대상구분	업체당 지원한도	지 원 내 역	대출기간
일반기업	5억원	이차보전 (기본지원율)	1년, 2년 : 만기 일시상환 3년 : 6개월 거치 5회 균등 분할상환
우대기업	5억원~30억원	이차보전 (기본+우대지원율)	※(사)함께하는 인천사람들 지원대상 : 1년 거치 36개월 균등 분할상환 또는 48개월 균등 분할상환

※ 우대기업 구분

대상구분	업체당 지원한도	지 원 내 역
FTA 인증 수출기업, FTA 활용 성공사례 수상기업, 8대 전략산업, 소상공인 경영대상 수상기업, 가족친화기업, 품질우수제품 선정기업	5억원	이차보전 (기본+우대지원율 0.5%)
유망중소기업, 아름다운공장 선정기업, 중소기업인대상 수상기업('18년 이전 수상자)	10억원	
비전기업	20억원	
중견성장사다리기업, 중소기업인대상수상기업('18년 수상자부터 적용)	30억원	
여성기업	5억원	이차보전 (기본+우대지원율 0.55%)
장애인기업	5억원	이차보전 (기본+우대지원율 0.7%)
(사)함께하는인천사람들 추천기업	2천만원	이차보전 (기본+우대지원율 0.5%)

② 목적성지원

구 분	지 원 대 상	업체당 지원한도	지 원 내 역	대출기간
산업확충 기업	우리시 전업기업	30억원	이차보전 (기본+추가지원율 0.5%)	1,2,3년 (일반지원 조건과 같음)
	강화산업단지 입주기업	5억원		
	서운산업단지 입주기업	15억원		
	산단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	5억원		
	재해기업	10억원		
수출기업	최근 1년간 수출 실적 또는 수출계약 실적이 있는 기업	20억원	이차보전 (기본+추가지원율 0.2%) * 은행 금리우대 별도	6개월, 1년 (일시상환)
창조경제 혁신기업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추천기업	3억원	이차보전 (기본+추가지원율 0.5%)	1,2,3년 (일반지원 조건과 같음)
고성장 기업 I	최근 3개년도 매출액 평균 증가율 20% 이상 기업	20억원	이차보전 (기본+추가지원율 0.5%)	
고성장 기업 II	매출액 100억원(또는 최근월 종업원수 100명) 이상이며, 3개년 매출액 평균 증가율 5% 이상 기업	20억원	이차보전 (기본+추가지원율 0.3%)	
고성장출 기업 I	3개년도 종업원수 평균 증가율 15% 이상 기업	20~50억원	이차보전 (기본+추가지원율 1.0%)	
고성장출 기업 II	매출액 100억원(또는 최근월 종업원수 100명) 이상이며, 3개년 종업원수 평균 증가율 5% 이상 기업	20~50억원	이차보전 (기본+추가지원율 0.5%)	
고성장출 기업 III	시 또는 정부 선정 일자리창출우수기업	20~50억원	이차보전 (기본+추가지원율 0.5%)	
고성장출 기업 IV	신청일기준 직전 1년간 고용증가 10명 이상	20~50억원	이차보전 (기본+추가지원율 0.5%)	
기술창업 기업	기술력과 사업성이 우수한 기업으로 보증기관을 통해 보증을 지원받는 기업	5억원	보증료 지원 (시 1.0%이내, 보증기관 0.2% 우대)	

4) 구비서류

① 일반기업자금

① 공부 및 업종증빙 서류

제출서류		비고					
공통 서류	경영안정자금 사용계획서 1부 (소정양식)	* 신청서는 별도첨부 없이 온라인에서 작성 * 계획서 및 동의서는 접수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 법인전환 기업은 업력인정을 위해 법인전환서류를 추가로 업로드해야 함 : 개인 - 폐업사실증명원 :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 포괄양수도서류					
	개인정보처리동의서 및 약서 각 1부 (소정양식)						
	최근 결산2개년도 재무제표증명원 2부 ※ 창업 1년 미만의 경우 추정재무제표 제출 생략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3부 ※ 최근 1개월분, 최근결산 2개년도의 마지막월 신고서 2개월 분						
	사업자등록증 1부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업 종 증 빙 서 류	제조업	<table border="1"> <tr> <td rowspan="2"><택1></td> <td>공장등록증명원 1부</td> <td>제조시설면적 500㎡이상 업체는 반드시 필요</td> </tr> <tr> <td>건축물관리대장 1부 (용도-공장, 제조업소/소유주 표기) 임대차계약서 1부 (임차공장일 경우)</td> <td>제조시설면적 500㎡미만으로 공장등록증명원이 없는 업체만 해당 ※ 표제부가 아닌 서류로 확인 요망</td> </tr> </table>	<택1>	공장등록증명원 1부	제조시설면적 500㎡이상 업체는 반드시 필요	건축물관리대장 1부 (용도-공장, 제조업소/소유주 표기) 임대차계약서 1부 (임차공장일 경우)	제조시설면적 500㎡미만으로 공장등록증명원이 없는 업체만 해당 ※ 표제부가 아닌 서류로 확인 요망
	<택1>	공장등록증명원 1부		제조시설면적 500㎡이상 업체는 반드시 필요			
		건축물관리대장 1부 (용도-공장, 제조업소/소유주 표기) 임대차계약서 1부 (임차공장일 경우)	제조시설면적 500㎡미만으로 공장등록증명원이 없는 업체만 해당 ※ 표제부가 아닌 서류로 확인 요망				
	자동차정비업(종합, 소형)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정비업(종합, 소형) 등록증 1부					
	시내버스·택시운송업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증, 택시운송사업 등록증 1부					
	건설업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 등록증 1부					
	측량업	지적법에 의한 측량업 등록증 1부					
	전기공사업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 등록증 1부					
	정보통신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 1부					
	소방시설공사업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소방시설공사업 등록증 1부					
	무역업	무역업고유번호부여증 및 수출실적증명 각 1부					
	창업보육센터입주기업	입주확인서 1부 (정부·인천광역시 지정한 창업보육센터, 제물포스마트타운 창업보육실)					
	(사)함께하는인천사람들 추천업체	(사)함께하는인천사람들 추천서 1부					
	제조업관련서비스업 지식기반서비스업 지식서비스업	해당 등록증 또는 허가증 1부 (업종범위는 【붙임】 참고) * 사업자등록증 기재내용은 업종 증빙으로 인정되지 않음					

② 기점사항 추가서류

구분	제출서류	비고
8대전략산업 (우대증빙과 중복)	전략산업 확인서 (소정양식), 매출증빙서류 별첨	-
고용우수인증기업 (우대증빙과 중복)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및 고용우수기업 인증서 1부 (중앙 및 인천시 선정,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선정) *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 발급서류는 우대지원 불가하며 평가시 가점 처리함	선정문의 ☎ 440-4234
산업단지입주기업	입주계약(확인)서 (산업단지 관리기관)	-
복리후생비 증가율 (공통서류와 중복)	최근 결산 2개년도 재무제표 (복리후생비) 최근 결산 2개년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마지막월 신고서 2개월분(종업원수)	-
가족친화기업 및 출산친화기업	가족친화기업 및 출산친화기업 선정서 (정부, 시)	선정문의 ☎ 02-6309-9048
메세나 참여 등 기부기업 (공통서류와 중복)	최근 결산년도 재무제표 (기부금액)	-

③ 우대기업 증빙서류

구분	제출서류	비고
시지정 유망중소기업	인천시지정 유망중소기업 선정서 1부	선정문의 ☎ 440-4298
시지정 비전기업	인천시지정 비전기업 선정서 1부	선정문의 ☎ 440-4298
중견성장사다리기업	인천시지정 중견사다리기업 선정서 1부	선정문의 ☎ 440-4298
중소기업인대상 수상업체	인천시지정 중소기업인대상 선정서 1부	선정문의 ☎ 440-4255
소상공인경영대상 수상기업	인천시지정 소상공인경영대상 선정서 1부	선정문의 ☎ 440-4212
장애인 기업	장애인기업확인서 1부 (www.smpp.go.kr 발급)	발급문의 ☎1666-9988
여성기업인	여성기업인확인서 1부 (www.smpp.go.kr 발급)	발급문의 ☎ 260-3602
가족친화기업	가족친화기업 선정서 (정부, 시)	선정문의 ☎ 02-6309-9048
아름다운공장선정 기업	인천시지정 아름다운공장 선정서 1부	선정문의 ☎ 440-4297
품질우수제품 선정 기업	인천시지정 품질우수제품 선정서 1부	선정문의 ☎ 440-4297
FTA 인증 수출기업	관세청 인증수출자 선정서 사본 1부	발급문의 ☎ 452-3632
FTA 활용 성공사례 수상기업	인천시선정 FTA 활용 성공사례 수상 선정서 사본 1부	-
우리시 8대 전략산업	전략산업 확인서 (소정양식), 매출증빙서류 별첨	* 확인서는 비즈오케이에서 다운로드

④ 기타서류

구분	제출서류
창업 1년 이내 또는 결산 미도래 기업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과세기간을 연간으로 환산하여 산정)
결산재무제표 기간이 1년 이내인 기업	최근 결산년도 재무제표증명원(표준 또는 세무사/공인회계사가 확인) 과세기간을 연간으로 환산하여 산정

※ 서류업로드 시 유의사항

구 분	유의사항
[공통서류]	
경영안정자금 사용계획서	소정양식 ※ ITP홈페이지나 비즈오케이 광고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계획서는 빈칸 없이 기입하고, 은행상당 도장을 받을 수 있을 개인 기업, 법인기업 모두 반드시 도장을 날인해야 함(서명 불가)
개인정보처리동의서 및 서약서	소정양식 ※ ITP홈페이지나 비즈오케이 광고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개인정보처리동의서에는 체크항목 표시, 서명이나 날인 필요 단, 개인 기업이 공동대표일 경우 모든 대표자분의 서류를 전부 등록
최근 결산2개년도 재무제표증명원 2부	국세청 홈택스에서 출력한 서류나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 확인한 증명원 필요 재무제표는 각각 표지 포함하여 원본으로 첫 장부터 끝장까지 업로드 ※ 2016, 2017년도 (2018년도 결산 전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3부	세무대리인이 확인한 서류나 확인이 안 될 경우 전자신고증 추가 ※ 최근결산 2개년도 마지막월 신고서 각 1부, 최근 귀속연월 1부(총 3부)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및 기타서류와 주소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소재지이전하거나 대표자추가 등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최근 서류로 준비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현재 체납된 내역이 없음을 증명해주는 것이므로 신청일 기준으로 유효 기간이 지나지 않아야 하며, 법인은 대표자가 아닌 회사이름으로 발급 단, 개인 기업이 공동대표일 경우 모든 대표자분의 서류를 전부 등록
[업종증빙서류]	
공장등록증	제조시설면적 500㎡이상일 경우 반드시 공장등록을 필하여야 하고, 사업등록증과 정보가 동일해야하며 관리공단의 도장 날인이 필요
건축물관리대장	사업장 주소지와 동일한 소재지로 용도 및 소유주 확인이 가능한 서류인지 확인하고 반드시 열람용이 아닌 발급용으로 제출 ※표제부가 아닌 서류등록
임대차계약서	사업장 주소지와 동일하게 500㎡미만이고 계약서가 작성되었는지 여부와 임대기간이 남아있는지를 확인하여 필요시 계약하거나 자동연장문구를 삽입하여 임대인/임차인의 도장 날인 후 업로드 ※ 임대인은 건축물관리대장 소유주와 일치해야 함
업종관련 등록증 및 인/허가증	유효기간이 있는 서류인 경우 새로 발급받거나(갱신여부 포함) 주소 명기된 경우 사업장 주소지와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
[우대증빙서류]	
우대지원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시지정 우수기업, 시지정 유망중소기업, 중소기업인 대상, 소상공인경영대상 수상기업, FTA 인증 수출기업, FTA 활용 성공사례 수상 기업, 우리시 8대 전략산업, 중간사다리기업, 품질우수제품 산장기업 등은 해당시 업로드 업체명/사업자번호/대표자명이 있는 경우 사업자등록증과 각 항목이 일치하는지 확인, 유효기간이 있는 서류는 기한 내 해당 여부를 확인 요망

[기타서류]	
대출금원제 확인서	조기상환한 업체는 해당 지원건의 대출날짜/대출금액/기존만기일/실제 상환일이 포함된 대출금원제 확인서를 추가로 등록 ※양식은 은행별로 상이

- ※ 서류가 미비하거나 누락된 사항은 미신청의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숙지하시고 위의 안내에 따라 서류를 업로드 하시기 바랍니다.
- ※ 단,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등의 사유로 재발급이 필요한 각종서류는 접수 기간 내 보완이 가능하나 되도록 미리 발급하시어 불이익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② 목적자금

■ 공통서류

제 출 서 류	비 고
경영안정자금 사용계획서 1부 (소정양식)	※ 신청서는 별도 첨부 없이 온라인에서 작성
개인정보처리동의서 및 서약서 각 1부 (소정양식)	
최근 결산년도 재무제표증명원 1부	
업종증빙서류 (일반지원과 동일)	※ 계획서 및 동의서는 접수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사업자등록증 1부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 목적자금 추가서류

구 분	제 출 서 류	
산업확충	우리시전업기업	이전일자 확인서류 ※ 법인(법인등기부등본), 개인(사실증명)
	신규산업단지입주기업	입주계약서 (1년 이내 입주확인서 제출) 관리기관 발급 입주확인서 이전일자 확인서류(법인등기부등본, 세무서발급 사실증명) ※ 입주 전 / 사유발생 1년 이내
	산업단지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	지식산업센터 입주확인서 이전일자 확인서류(법인등기부등본, 세무서발급 사실증명) ※ 사유발생 1년 이내
	재해기업	재해확인서(피해금액 증빙서류 포함), 부대시설 증빙서류, 재해확인증 (화재일 경우 화재증명원)
창조경제혁신기업	창조경제혁신센터 추천서 1부 , 창업사실증명원 1부	
수출기업	수출실적증명서 1부 (신청일 기준 최근 1년간) 수출계약서류(L/C, T/T, 구매확인서, 계약서 등)	
고성장기업	재무제표 ※ 최근 결산년도 전 2개년도 (2개년도 추가)	
고용창출기업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최근 3개년도 마지막 월 신고서 (3개월 분)	
기술창업기업	통장사본 1부 ※ 법인(개인사업자-대표)명의의 통장	

5) 기타 업종범위

제조업관련 서비스업

산업명	표준산업분류번호
도로화물 운송업	493
해상 운송업	501
화물 취급업	5294
보관 및 창고업	5210
물류 터미널 운영업	52913
화물 운송 중개, 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	52992
화물 포장, 검수 및 계량 서비스업	52993
기타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임대업(오락기 및 도박기계 임대업은 제외)	76390
산업설비, 운송장비 및 공공장소 청소업	74212
폐기물 수집·운반업	381
(기타 환경 정화 및 복원업 포함)	(39009)
폐기물 처리업	382
폐수 처리업	37012

제조업관련 지식기반서비스업

산업명	표준산업분류번호
컴퓨터 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	62021
유선 온라인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11
모바일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12
기타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19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21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22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62010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 매개 서비스업 (다만 제조업 지원목적만 해당)	63120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 제공업 (다만 제조업 지원목적만 해당)	63991
물리, 화학 및 생물학 연구개발업	70111
농림수산업 및 수의학 연구개발업	70112
의학 및 약학 연구개발업	70113
전기·전자공학 연구개발업	70121
기타 공학 연구개발업	70129
기타 자연과학 연구개발업	70119
경제 및 경영학 연구개발업	70201
기타 인문 및 사회과학 연구개발업	70209
시장 조사업(여론 조사업 제외)	71400
경영 컨설팅업	71531
도양 및 지하수 정화업	39001
기타 환경 정화 및 복원업	39009
환경 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72122
기타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72129
제품 디자인업	73202
시각 디자인업	73203
패션, 섬유류 및 기타 전문 디자인업	73209
물질 성분 검사 및 분석업	72911
기타 기술 시험, 검사 및 분석업	72919
일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59111
애니메이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59112
광고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59113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59114

지식서비스업

산업명	표준산업분류번호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	74100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75991
전시, 컨벤션 및 행사 대행업	75992
포장 및 충전업	75994

4 구조고도화자금

1) 지원대상

■ 기계구입자금

① 제조업 요건 충족 (제조업 전업률 30% 이상 및 공장등록)

- 최근 결산년도 손익계산서에서 【제품매출】 / 【전체매출】 비율이 30% 이상
- 공장건축면적 500㎡ 이상 ☞ 공장등록증 필수
- 공장건축면적 500㎡ 미만 ☞ 공장등록증 또는 건축물대장 (공장/제조소 용도)

② 생산시설, 검사장비, 공해방지시설 등을 구입

■ 공장확보자금, 주차장설치자금

□ 공장확보

① 제조업 요건 충족 (제조업 전업률 30% 이상 및 공장등록)

- 최근 결산년도 손익계산서에서 【제품매출】 / 【전체매출】 비율이 30% 이상
- 공장건축면적 500㎡ 이상 ☞ 공장등록증 필수
- 공장건축면적 500㎡ 미만 ☞ 공장등록증 또는 건축물대장 (공장/제조소 용도)

② 자가공장을 확보하기 위한 공장구입 및 신축, 공장증설을 위한 증축 등

- (신 축) 현재 임차공장을 운영 중이면서 자가공장을 신설하기 위해 공장설립 승인과 건축허가를 득한 기업
- (매 입) 현재 임차공장을 운영 중이면서 기존공장을 매입하기 위해 공장제조시설 설치승인을 득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한 기업
- (증 축) 자가공장을 증설(증설이후 제조면적 500㎡이상)하고자 공장증설승인 및 건축허가를 득한 기업
- (임대보증금 지원) 공장 제조시설 설치승인을 득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기업
- (도시개발에 따른 이전대상) 공장이전대상기업이 기존공장(자가)을 폐쇄하고 자가 공장을 신축하고자 공장설립승인과 건축허가를 득한기업
- (리모델링) 구조고도화사업 대상 단지로 선정된 산업단지에 입주한 공장의 담장, 전시장 등 환경개선을 하고자 하는 기업

□ 주차장설치

- (부설주차장) 국가산단 입주 제조업체로, 부설주차장을 설치 또는 확대하고자 하는 기업

■ 연구소설치자금

① 제조업 요건 충족 (제조업 전업률 30% 이상 및 공장등록)

- 최근 결산년도 손익계산서에서 【제품매출】 / 【전체매출】 비율이 30% 이상
- 공장건축면적 500㎡ 이상 ⇨ 공장등록증 필수
- 공장건축면적 500㎡ 미만 ⇨ 공장등록증 또는 건축물대장 (공장/제조소 용도)

② 연구소를 설치하기 위한 건물신축, 건물구입, 건물 증개축 등

- (신 축)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을 받고 연구소를 건축하고자 건축허가를 득한 기업
- (매 입)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을 받고 기존연구소 건물을 구입하고자 매매 계약을 체결한 기업
- (증·개축)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을 받고 기존연구소 건물을 증개축 하고자 건축 허가를 득한 기업

■ 벤처창업자금

① 창업 7년 이내

② 벤처기업(예비벤처 포함)이거나 이노비즈기업, 창업보육시설에 입주한 기업 등

- ※ 두 가지 요건이 서류상 충족되면 신청가능, 추후 기술보증기금에 기술평가 의뢰 후 평가되는 보증금액만큼 벤처창업자금으로 추천함
- ※ 기술보증기금에서 기술평가등급 B이상인 창업 3년 이내의 기업도 추천가능함

■ 지식산업센터건설자금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 2의 규정에 따라 산업단지에 지식산업 센터의 설립승인과 건축허가를 득한 사업자

■ 재해자금

① 경영안정자금 대상 및 구조고도화 대상 전 업종

② 홍수, 태풍 등의 자연재해나 화재, 폭발 등의 인적재난 피해를 입은 기업

- ※ 피해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2) 지원내용

① 업종구조고도화

구분		지원대상	용자금리	용자한도	용자기간
기계구입	자동화	제조업	2.8%(변동)	10억원 이내 (연계운전 2억원)	8년 (3년거치 5년 분기별 분할상환) ※ 연계운전: 3년 (1년거치 2년 분기별 분할상환)
	소기업육성			4억원 이내 (연계운전 1억원)	
사업장확보	공장확보·연구소설치	10억원 이내			
	국가산단 주차장설치	5억원 이내			
벤처창업자금		벤처기업, 이노비즈기업 등	2.3%(고정)	7억원 이내	8년 (3년거치 5년 분기별 분할상환)

② 산업구조고도화

구분	지원대상	용자금리	용자한도	용자기간
지식산업센터 건설자금	지식산업센터 설립 사업자	2.8%(변동)	200억원 이내	8년 (3년거치 5년 분기별 분할상환)
재해자금	재해 피해기업	0%(무이자)	2억원 이내	5년 (2년거치 3년 분기별 분할상환)

※ 지원 제외대상

- 인천시(市) 또는 구(區)구조고도화자금 수혜자로 접수일 현재 상환중인 기업
 - ※ 시 구조고도화자금 지원결정잔액(또는 업체별 지원한도)이 남아있는 업체는 남은 한도 내 지원 가능
 - ※ 업종구조고도화자금 지원총액(대출잔액기준)이 지원한도액 10억원을 초과할 수 없음 (단, 공장 부설주차장설치자금 지원기업은 지원총액 10억원을 초과하여 지원함)
- 동일기업 중복지원 제한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을 통한 시설자금 대출잔액 45억 이상인 기업
 - ※ 재해자금은 제한기준 적용에서 제외함
- 중앙부처 및 지자체 지원자금이 최근 5년간 1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원제한
 - ※ 지식산업센터건설자금, 재해자금은 제한기준 적용에서 제외함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미등록 공장
 - ※ 공장건축면적 500㎡미만의 소기업은 적합한 건축물(용도:공장, 제조소)일 경우 가능
- 제조업 전업률이 30%미만인 기업(제조업체에 한함)
- 휴·폐업 중인 기업
- 중고시설 및 기계를 구입하고자 하는 기업
- 세금을 체납중인 기업
- 유가증권 또는 코스닥시장 상장기업
- 최근 2년 이내 자체신용으로 공모 회사채 발행한 기업
-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 공정위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관계회사로 지정된 중소기업(필요시 중소기업확인서 제출)
-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공 통】

- 신청일 현재 업종구조고도화자금 지원 총액(대출잔액기준)이 지원 한도액 10억원을 초과할 수 없음
 - ※ **주차장설치자금을 지원받은 경우는 제외**
- 백만원 미만의 금액은 지원금액에 산입하지 않고 최저 지원금액은 1,000만원 이상으로 함
- 기 지급된 금액은 지원하지 않으므로 해당금액만큼 감액하여 추천함
- 신청금액이 시설가격을 초과할 경우 초과액은 제외하고 추천함
- **부가가치세는 제외함**

【기계구입자금】

- 견적서(계약서)에 표시된 구입가격을 적용함
- 연계운전자금은 시설자금의 50%범위내에서 제조시설면적에 따라 최대2억원(자동화사업) 또는 최대1억원(소기업육성) 범위내에서 지원
- 중고기계, 설치이후 잔금지급이 완료된 기계, 금형 및 치공구는 지원에서 제외함
- 외산기계는 신청일 현재 고시환율 중 전신환(고객이 살 때)금액으로 계산하여 초과액은 제외하고 추천함
- 외산기계의 구입가격은 CIF(도착항 인도가격)이하를 기준으로 함

【공장확보·주차장설치·연구소설치자금】

- **부지매입비는 지원하지 않음**
- 공장구입자금은 건물분의 시가표준액 범위내(실거래금액이 작을 경우 실거래가 적용)에서 초과액은 제외하고 추천함
 - ※ 건물분 시가표준액 : 인천시 전자납부시스템 공시내용 확인
- 공장신축자금은 견적서(계약서)에 표시된 소요금액을 적용함
- 주차장설치자금은 업종구조고도화자금 지원총액 한도 10억원을 초과하여 지원가능(최대 5억원)

【벤처창업자금】

- 운전자금만도 3억원 이내에서 신청 가능
- 기술보증기금의 보증 평가금액으로 추천금액이 결정됨

【지식산업센터건설자금】

- 부지매입비는 지원하지 않음
- 건설자금은 도급계약서에 표시된 소요금액을 적용함

【재해자금】

- 피해금액 범위 이내에서(최대 2억원)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 횡수제한, 중복지원, 매출액 상관없이 지원
 - ※ 전체 지원규모 이내에서 지원함

3) 구비서류

① 기계·공장 구입자금

구분	서류	비고	
공통	사업자등록증		
	재무제표	- 최근 결산년도 기준 ※ 창업 1년 미만의 경우 제출 생략	
	제조업증빙서류	- 제조시설면적500㎡이상 : 공장등록증 - 제조시설면적500㎡미만 : 공장등록증 또는 건축물대장 및 임대차계약서	
	신청서	- 온라인 신청	
	사업계획서	- 소정양식	
	개인정보처리동의서	- 소정양식	
기계	국세 및 지방세 증명서	- 완납증명서	
	구입시설 견적서 (또는 계약서) 구입시설 카탈로그 (또는 도면)	- 제작일 경우 도면으로 제출	
공장	공장설립승인서	- 산단일 경우 입주계약서로 대체함 - 매입일 경우 공장 제조시설설치 승인서로 제출 ※ 제조시설설치승인서는 업체가 사용중인 공장이어서 절차상 잔금지급 전 발급이 어려울 경우 잔금지급 후 한달 이내 제출 가능 ※ 공장설립승인서, 공장제조시설설치승인서는 제조시설면적 500㎡미만일 경우 제출생략 - 증축일 경우 공장증설승인서로 제출	
	매입	검인매매계약서	-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으로 대체 가능 (매매계약서 포함) - 제조면적 500㎡ 미만일 경우 매입건물 건축물대장 제출 필요
	건축	건축허가서	
		공사 견적서 (또는 계약서)	
		임차공장증빙서류	-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 법인등기부등본 (증축제외)
	도시개발 이전대상	- 도시개발에 따른 공장이전 대상기업 확인자료	
주차장	부설주차장설치계획서	- 주차장법에 의해 관련기관에 제출한 동일서류 (법정주차대수 도면 및 추가설치도면 포함)	
	건축허가서 또는 공작물축조허가서	- 허가범위가 아닐 경우 신고필증으로 제출	
	주차장설치비용 견적서 (또는 계약서)	- 신축일 경우 견적서 내 주차장공사에 대한 명세서 별도 증빙	
	건축물관리대장	- 사후에 추가된, 증가된 현황 대조 확인	
연구소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매입	검인매매계약서	- 부동산거래 계약 신고필증으로 대체 가능 (매매계약서 및 건축물대장 포함)
	건축	건축허가서	
공사 견적서 (또는 계약서)			

② 벤처창업자금

구분	서류	비고
공통	사업자등록증	
	재무제표	최근 결산년도 기준 ※ 창업1년 미만의 경우 제출생략
	업종증빙서류	벤처기업 확인서, 이노비즈기업 확인서, 창업보육시설 입주확인서 등 ※ 기술평가 B등급 이상, 3년 이내 기업일 경우 업종증빙서류 제출생략
	신청서	온라인신청
	사업계획서	소정양식
	개인정보처리동의서	소정양식
	국세 및 지방세증명서	완납증명서
	시설구입 (추가)	구입시설 견적서 (또는 계약서) 구입시설 카탈로그

④ 재해자금

구분	서류	비고	
공통 (필수)	사업자등록증		
	재무제표	최근 결산년도 기준 ※ 창업1년 미만의 경우 제출생략	
	업종증빙서류	제조업	제조시설면적 500㎡ 이상 : 공장등록증 제조시설면적 500㎡ 미만 : 공장등록증 또는 건축물대장 및 임대차계약서
		비제조업	등록증 및 인허가증
	신청서	온라인신청	
	사용계획서	소정양식	
	개인정보처리동의서	소정양식	
	국세 및 지방세 증명서	완납증명서	
	자연재해	재해확인증	동사무소(주민센터), 구청
	화재	화재증명원	소방서 발급
		화재현장조사서	소방서 발급 (기업에서 기관에 정보공개 요청)
	기타 피해금액 증빙서류	세금계산서, 입금통장 사본, 견적서 등	

③ 지식산업센터 건설자금

구분	서류	비고
공통 (필수)	사업자등록증	
	재무제표	최근 결산년도 기준 ※ 창업1년 미만의 경우 제출생략
	신청서	온라인신청
	사업계획서	소정양식
	개인정보처리동의서	소정양식
	국세 및 지방세 증명서	완납증명서
	지식산업센터설립승인서	입주계약서로 대체가능
	건축허가서	
	도급계약서	※ 견적서로는 증빙 불가능
	설계도면	
법인등기부등본	※ 개인사업자일 경우 제출생략	



자금상담 260-0623/0622/0621, 시스템관련 070-8787-8286~7